

판 결

사 건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결된 공급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